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이정연 의원
제출일 : 2026. 8.

1. 제안이유

- 가. 현행 조례는 관외 분묘에 안치된 부모의 유골을 개장하여 마루공원 봉안당에 모시려는 장기 거주 시민을 봉안당 안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나. 이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 유골 중 관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를 봉안당 안치대상에 추가하여 장기 거주 시민의 장사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 거주 시민 부모의 관외 분묘 개장유골을 봉안당 안치대상에 추가(안 제8조제5항제6호)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유정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1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의 부모 유골 중 관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를 마루공원 봉안당의 안치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장기 거주 시민의 장사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제8조제5항은 봉안당 사용 신청자가 각 호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1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의 기간 산정방법과 전입·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가족관계 및 개장·화장 사실의 증빙서류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